

2023년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2023년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응시번호		
인턴 37	해양	인턴 37-001	인턴 37-002	
인턴 38	행정	인턴 38-003	인턴 38-004	인턴 38-005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사전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스캔), 증명사진 파일, 급여통장 사본 1부(스캔), 서약서(서식1)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e-mail : hamjs0@korea.kr / 제출기한: 5. 3.(수) ~ 5. 4.(목) 12시까지

근로계약 예정일 및 출근일: 5. 8.(월)

☎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51-609-6211

【서식】

서약서

본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2023년 해양수산부 청년인턴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